

8. 共同住宅管理令中 改正令(案) 立法豫告

建設部公告 第1993-86號 1993. 5. 31

1. 개정이유

정부의 경제행정규제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단지의 부대·복리시설중 공유시설의 신·증축 가능 범위를 주차시설 등 입주자 공유시설전체로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, 공동주택의 입주자 자치관리의 폐지신고 규정을 삭제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시설중 신축
· 증축이 가능한 범위를 관리용시설
· 노인복지시설·체육시설에서 주차시설, 가스공급시설, 냉난방공급시설 등 입주자공유시설 전체로 확대함.
- 나.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관리 폐지신고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.

- 다.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 발행기관을 종전의 건설공제조합에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추가함.
- 라. 공동주택관리업자의 타지역 영업승인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이양함.

3. 의견제출

이 개정령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16절지 세워서 작성)를 건설부장관(참조: 주택국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전화: 503-7362)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: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